

섹션 504, 서브파트 D 및 하와이 법률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섹션 504/1973 년 제정 재활법 서브파트 D 및 하와이 법률)



이 브로셔에는 연방 및 주 법에 의해 보장되는 장애 학생 및 장애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에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방 및 주 법에 의해 보장되는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1. 학생이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공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2. 학교로부터 연방 및 주 법에 입각한 학부모의 권리를 통보받을 권리.
3. 학생의 증명, 평가 또는 교육적 배치와 적절한 무상 공공 교육 제공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
4. 학교가 시험 집행 또는 기타 평가를 포함한 초기 평가를 진행하거나 특수 교육 또는 학생과 관련된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기에 앞서 동의를 표시할 권리.
5. 학생이 적절한 무상 공공 교육을 받을 권리. 이에는 장애인의 필요를 최고로 충족하는 수준으로 장애가 없는 학생과 함께 교육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교육부가 보조 기구 및 서비스의 사용으로 일반 환경에서 학생의 교육이 충분히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교육부는 장애인을 교육부가 운영하는 일반 교육 환경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에는

학생이 학교에 통학하고 학교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운송수단을 포함해 학교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6. 평가 및 재평가 기간 동안 학생에 대한 현재 정보를 검토하는 것과 장애 학생으로서의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기회 및 학생의 교육 계획을 개발, 검토, 개정하는데 참여하고 배치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을 권리.
7. 다양한 정보에 근거해 정해진 평가 정보 및 교육 배치 결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이 정보는 반드시 현재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정도로 최신 정보여야 하며 신중하게 고려되고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8. 학생이 시설에서 교육받게 하며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
9.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비정규 학습 및 정규 교과 외의 활동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갖을 권리.
10. 학생의 증명, 평가 또는 교육적 배치에 관련된 결정에 대한 모든 연관된 기록을 검토할 권리.
11. 주에서 학생을 보호하거나 교육부에서 부모를 증명할 수 없고 학생의 부모를 찾을 수 없거나 학생의 대리 부모를 요구하는 경우 교육부에서 대리 부모를 지정받을 권리. 대리 부모는 증명, 평가 또는 교육적 배치와 적절한 무상 공공 교육 제공에 관련하여 모든 일에서 학생을 대변합니다.
12. 학생에게 10 일 이상의 정학을 내린다는 Complex Area Superintendent 의 구두 승인이 있는 수업일 3 일 이내에 학교로부터 학생에게 엄중한 훈육을 시행하겠다는 학교의 의사와 함께 엄중한 훈육 사건 및 항의 양식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서신 통지를 학부모가 받을 권리.

13. 해당 연도에 수업일이 연속 또는 누적 10 일 이상인 배치 변화를 수반하는 훈육 행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장애와 행동의 연관성 검토를 수행하는 팀의 구성원이 될 권리. 팀은 반드시 부모가 제공하는 모든 적절한 정보를 포함해 비행 행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의 장애로 인해 나타난 행동이 아닐 경우에만 정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학생의 증명, 평가 또는 교육적 배치 또는 적절한 무상 공공 교육 제공과 관련된 정당한 절차에 대한 요청을 교육부에 접수한 경우, 학부모가 중재를 포함해 대안적인 분쟁 해결 여부를 통지받을 권리. 대안적인 분쟁 해결의 사용은 정당한 청문 절차에 대한 요청이 청구되지 않더라도 학생의 증명, 평가 또는 교육적 배치와 적절한 무상 공공 교육 제공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권장됩니다. 대안적인 분쟁 해결의 사용은 자발적인 것이며 정당한 청문 절차를 부정하거나 연기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15. 학생의 증명, 평가 또는 교육적 배치 또는 적절한 무상 공공 교육 제공과 관련된 공정하고 정당한 청문 절차를 요청할 권리. 청문회의 일원으로써 학부모는 반드시 결정이 내려지는 날짜와 공정한 청문회 담당자의 선택 과정을 교육부로부터 안내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변호인과 동반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요청은 반드시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역의 **Complex Area Superintendent** 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청서는 학생의 학교 또는 **Complex Area**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16.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30 일 이내에 법원에 청문회 결정을 항소할 권리.

학생 차별금지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방법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학교 교장
- 학군 사무소:



호놀룰루(Honolulu) 학군

Farrington/Kaiser/ Kalani Complexes733-4940
 McKinley/Roosevelt/Kaimuki Complexes733-4977

센트럴오아후(Central Oahu) 학군

Aiea/Moanalua/Radford Complexes421-4263
 Leilehua/Mililani/Waialua Complexes622-6432

리워드오아후(Leeward Oahu) 학군

Campbell/Kapolei Complexes675-0335
 Nanakuli/Waianae Complexes668-5746
 Pearl City/Waipahu Complexes675-0384

윈워드오아후(Windward Oahu) 학군

Castle/Kahuku Complexes784-5941
 Kailua/Kalaheo Complexes784-5940

하와이(Hawaii) 학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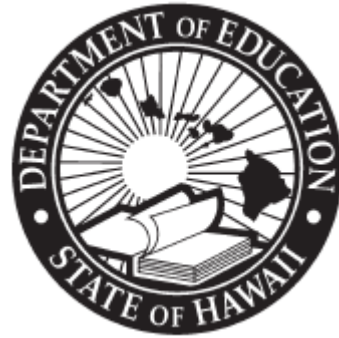
Honokaa/Kohala Complexes775-8895
 Kealahou/Konawaena Complexes323-0015
 Hilo/Waiakea Complexes974-4401
 Kau/Keaau/Pahoa Complexes982-4252

마우이(Maui) 학군

Baldwin/King Kekaulike/Maui High Complexes873-3520
 Hana/Lahaina/Lanai/Molokai Complexes553-1723

카우아이(Kauai) 학군

Kapaa/Kauai/Waimea Complexes274-3504



교육부 섹션 504 코디네이터: Exceptional Support Branch
 475 22nd Ave., Bldg. 302
 Honolulu, Hawaii 96816
 전화: (808) 305-9806

장애로 인한 HIDEOE 차별금지 관련 문의:

섹션 ADA/504 문의
 Krysti Sukita, ADA/504 Specialist
 Civil Rights Compliance Office
 하와이주 교육부
 P.O. Box 2360
 Honolulu, Hawaii 96804
 (808) 586-3322 또는
 crco@notes.k12.hi.us

차별 및/또는 성희롱과 관련된 문의도 미국 교육부 OCR(Office for Civil Rights)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섹션 504, 서브파트 D 및 하와이 법률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Exceptional Support Branch
 하와이주 교육부
 2018 년 5 월, RS 17-1183 (RS 14-1409 개정)